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2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엄태영

정동만 • 김위상 • 진종오

성일종 · 강승규 · 박덕흠

이종욱 · 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 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u><삭 제></u>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	
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	
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	
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 41. (생 략)	24. ~ 4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
	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

	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
	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u>쏜 사람</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